

교직원외국여행에관한규정

1997.12.10.제정 2002.11.01.일부개정 2004.12.24.일부개정

<총무팀>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외국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교직원의 외국여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 교환교수, 직무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의 공무원촉이나 국제적인 학회 또는 이에 준할 만한 국제회합에 참석하는 경우
3. 대학의 공무출장 및 학술교류 등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개정 2004.12.24.)
4.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수행

제 3 조 (여행기간) ①제2조 제1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은 1년간의 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여행기간은 총장이 정한다.(신설 2004.12.24.)

제 4 조 (허가신청) 제2조의 목적으로 외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사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학장 또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원 및 재정보증서는 제2조 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1.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2. 초청장 또는 관련공문 사본
3. 국외여행 계획서
4. 국외여행자 직무대행표
5. 국외여행자 서약서
6. 신원 및 재정보증서

제 5 조 (여행허가) 총장은 외국여행 신청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의 협의를 거쳐 대학, 부속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속기간, 직위, 국내외 대학에서의 학위과정 이수실적을 참작하여 허가한다.

제 6 조 (기간연장) ①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행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전에 상세한 사유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한 여행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휴직) 교직원이 외국여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하며, 그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1. 3년이상 근속자가 제2조 제1호의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한 때
2. 3년이상 근속자가 제2조 제1호 및 제4호의 목적으로 6개월을 초과한 때
3. (삭제)
4. 외국의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복무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한 때

제 8 조 (허가의 취소) 국외여행 중에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이 그 여행허가를 취소하고 귀국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여행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본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여행기간 중 국가 또는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과 여행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
3. 외국여행기간이 만료되어도 귀국 및 귀교하지 않을 때
4. 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이 휴직기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하지 않거나 총장의 소환에 불응하였을 때

제 9 조 (급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단,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무와 관련한 외국여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7년이상 근속자는 보수총액의 100%지급
2. 5년이상 7년미만은 보수총액의 90%지급
3. 3년이상 5년미만은 보수총액의 80%지급
4. 3년미만은 보수총액의 60%지급
5. 근속연한의 제한없이 3개월이내 단기 외국여행의 경우는 보수전액

제10조 (여비보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에 여행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여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의무) 외국여행에 따르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개월이상을 요하는 외국여행기간 중에는 매 6개월마다 활동의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외국여행이 끝난 후 1개월이내에 국외여행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교직원은 귀국 후 그 여행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 대학교에 봉직하여야 하며, 봉직 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외국여행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진행 중인 출장은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